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도록 함〉
■ 권철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678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2. 18.

다. 회 부 일 : 2024.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촬영물등”이라 함)으로 인해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국가가 촬영물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성희롱, 성폭력 등 사이버폭력이 빈번해지면서 많은 피해 학생들이 홍보 부족으로 국가의 지원 사실을 모르고 촬영물등의 삭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들의 촬영물등 삭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촬영물등의 삭제에 위한 지원의 내용·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현행	개정안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 ----- ----- ----- ----- ----- ----- <u>있으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 <u>방법</u> , 제4항에 따른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 <u>방법 및 공지방법</u> ----- ----- -----.

딥페이크(deepfake)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의미함. 최근 학교 현장에서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되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되는 등 성범죄가 확산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

교육부는 매주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 뱃페이크 피해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2024년 11월 1일 기준 피해 교원은 33명, 피해 학생은 883명에 달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상황임.

< 학교 뱃페이크 피해 현황 >

구분	피해 신고(건)				수사 의뢰(건)				삭제지원 연계(건)	피해자 현황(명)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학생	교원	직원등
누적합계 (1.1.~11.01.)	552	17	238	297	467	17	209	241	247	920	883	33	4
1차조사 (8.27. 기준)	196	8	109	79	179	7	96	76	97	196	186	10	0
2차조사 (9.6. 기준)	238	4	70	164	171	4	55	112	87	421	402	17	2
3차조사 (9.13. 기준)	32	1	14	17	31	1	14	16	14	105	104	0	1
4차조사 (9.27. 기준)	38	3	16	19	36	1	16	19	20	111	107	4	0
5차조사 (10.4. 기준)	5	0	2	3	5	0	2	3	1	7	5	2	0
6차조사 (10.11. 기준)	7	1	4	2	10	4	4	2	11	10	10	0	0
7차조사 (10.18. 기준)	17	0	9	8	16	0	8	8	11	27	27	0	0
8차조사 (10.25. 기준)	9	0	7	2	9	0	7	2	4	24	24	0	0
9차조사 (11.01. 기준)	10	0	7	3	10	0	7	3	2	19	18	0	1

자료: 교육부

이러한 뱃페이크 영상물을 비롯한 사이버폭력¹⁾에 해당하는 촬영물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포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 예방법”이라 함) 제16조의4는 국가가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교육부 차원에서 촬영물등 삭제 지원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촬영물등 삭제를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으로 피해자를 연계해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산하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²⁾에 근거하여 플랫폼별로 삭제를 요청하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을 요청하고 있음.

(생략)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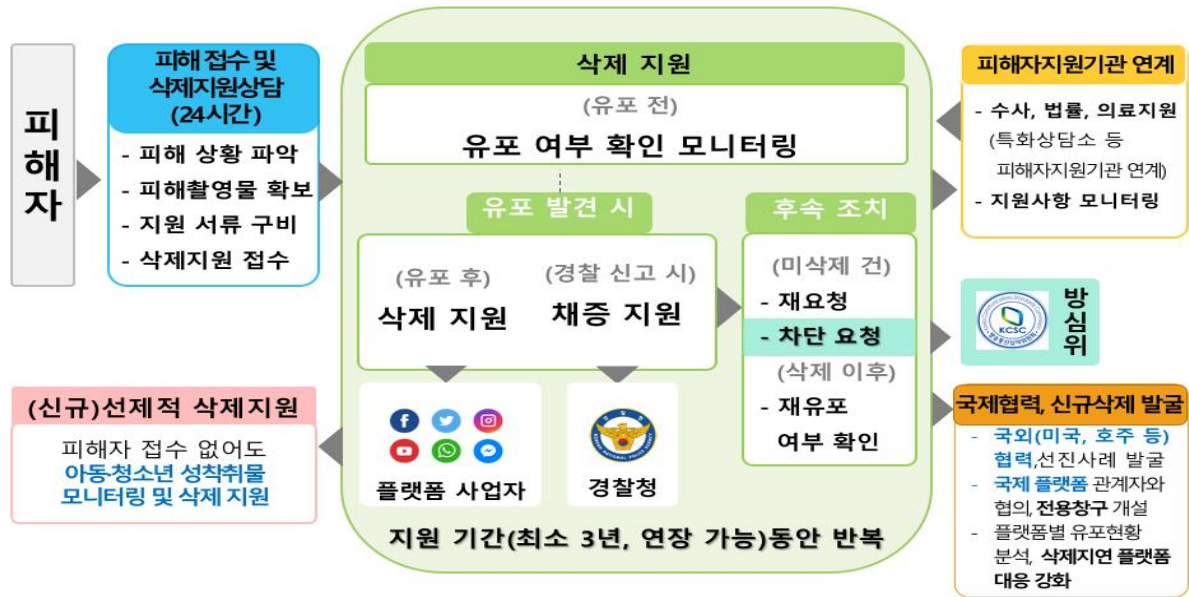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촬영물등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촬영물등 삭제 지원 흐름도 >



자료: 여성가족부

개정안은 국가의 촬영물 삭제 지원 연계제도를 학생들이 보다 명확히 인지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삭제 지원의 내용과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들의 촬영물등 삭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교육부는 삭제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학교 뱃지 등 허위영상물 예방 및 대응 자료를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안내하고 교육부 블로그·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며,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를 통해 상담과 절차 안내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각 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신고·상담 배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도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촬영물 삭제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들이 해당 제도의 존재와 이용 방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촬영물 삭제 지원 연계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피해 발생 시 학생들이 삭제 지원을 원활히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개정안과 같이 특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한 입법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³⁾에서는 홍보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고, 이를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구체적인 홍보 매체·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교육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홈페이지 게시 등 공지 방법은 자료의 형태나 학생·학부모가 많이 접속하는 플랫폼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 대통령령으로 공지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4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